|  |  |  |
| --- | --- | --- |
| **3.1.3 전자 특허출원 관련 규정**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57호<전자 특허출원 관련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장 텐리푸2010년 8월 26일**제1조** 인터넷 전자서류 형식으로 제출한 특허출원(이하 전자 특허출원이라 함) 관련 절차와 요구를 규범화하고 특허 출원인의 특허출원에 편의를 제공하고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비준 효율을 제고하고 전자 행정업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2조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제2조** 전자 특허출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지적재산권국과《전자 특허출원시스템 사용자 등록협의》(이하 사용자협의라 함)를 체결하여야 한다.전자 특허출원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특허대리기구는 그 특허대리기구의 명의로 국가지적재산권국과 사용자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출원인이 국가지적재산권국과 사용자협의를 체결한 특허대리기구에 전자 특허출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적재산권국과 별도의 사용자협의를 체결하지 아니한다.**제3조**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아울러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출원을 제출한 신청인을 대표인으로 한다.**제4조**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의 특허출원은 모두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특허법 실시세칙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국제출원의 중국 국가단계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특허법 실시세칙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하는 특허 국제출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 특허출원의 발명창조가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므로 비밀에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페이퍼형식으로 특허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출원인이 전자파일 형식으로 특허출원을 제출한 후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당해 특허출원을 비밀에 붙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땅히 당해 특허출원을 페이퍼형식으로 전환시켜 계속 심사하는 동시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후속 절차에서 페이퍼형식으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실시세칙 제8조 제(1)호에 따라 직접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외국의 유관기구에 특허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하는 비밀 심사청구서와 기술방안은 마땅히 페이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전자 특허출원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규정한 서류서식, 데이터기준, 조작규범 및 전송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전자특허출원시스템이 전자 특허출원과 관련 서류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제7조** 출원인이 특허출원과 관련한 각종 수속을 밟을 때 마땅히 전자파일 형식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출원인의 페이퍼형식으로 제출하는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페이퍼형식으로 특허출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후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므로비밀에 붙여야 하는 특허출원은 제외하고, 출원인은 페이퍼형식의 출원을 전자 특허출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특별한 상황에서 전자 특허출원을 페이퍼형식 출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출원인이 신청하고 아울러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심사 비준과 관련 후속 수속을 밟은 후 페이퍼형식 출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8조** 출원인이 전자 특허출원의 각종 수속을 밟을 때 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이나 심사지침에서 반드시 원본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관련 서류는 출원인이 원본의 스캐닝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출원인에게 규정한 기한 내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출원인이 전자 특허출원을 제출할 때 특허법 실시세칙이 규정한 각종 비용의 절감이나 유예납부를 신청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증명서류 원본의 스캐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스캐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제9조** 전자파일 형식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전자 특허출원시스템이 당해 전자파일을 접수한 날이 특허출원 제출일로 된다.전자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전자파일 형식으로 출원인에게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 결정 또는 기타 서류는 당해 서류를 발송한 날로부터 15일이 만료되면 출원인이 그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0조** 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 심사지침 중의 특허출원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모든 규정은 페이퍼형식으로 제출하는 특허출원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전문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이 전자 특허출원을 적용한다.**제11조** 이 규정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2조**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2월 12일 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35호 <전자 특허출원 관련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  | **关于专利电子申请的规定**国家知识产权局令第57号　　《关于专利电子申请的规定》已经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0年10 月1日起施行。局 长 田力普二○一○年八月二十六日　　**第一条** 为了规范与通过互联网传输并以电子文件形式提出的专利申请（以下简称专利电子申请）有关的程序和要求，方便申请人提交专利申请，提高专利审批效率，推进电子政务建设，依照《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二条和第十五条第二款，制定本规定。 　　**第二条** 提出专利电子申请的，应当事先与国家知识产权局签订《专利电子申请系统用户注册协议》（以下简称用户协议）。　　开办专利电子申请代理业务的专利代理机构，应当以该专利代理机构名义与国家知识产权局签订用户协议。 　　申请人委托已与国家知识产权局签订用户协议的专利代理机构办理专利电子申请业务的，无须另行与国家知识产权局签订用户协议。　　**第三条** 申请人有两人以上且未委托专利代理机构的，以提交电子申请的申请人为代表人。　　**第四条** 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专利申请均可以采用电子文件形式提出。 　　依照专利法实施细则第一百零一条第二款的规定进入中国国家阶段的专利申请，可以采用电子文件形式提交。 　　依照专利法实施细则第一百零一条第一款的规定向国家知识产权局提出专利国际申请的，不适用本规定。　　**第五条** 申请专利的发明创造涉及国家安全或者重大利益需要保密的，应当以纸件形式提出专利申请。　　申请人以电子文件形式提出专利申请后，国家知识产权局认为该专利申请需要保密的，应当将该专利申请转为纸件形式继续审查并通知申请人。申请人在后续程序中应当以纸件形式递交各种文件。　　依照专利法实施细则第八条第二款第（一）项直接向外国申请专利或者向有关国外机构提交专利国际申请的，申请人向国家知识产权局提出的保密审查请求和技术方案应当以纸件形式提出。　　**第六条** 提交专利电子申请和相关文件的，应当遵守规定的文件格式、数据标准、操作规范和传输方式。专利电子申请和相关文件未能被国家知识产权局专利电子申请系统正常接收的，视为未提交。　　**第七条** 申请人办理专利电子申请各种手续的，应当以电子文件形式提交相关文件。除另有规定外，国家知识产权局不接受申请人以纸件形式提交的相关文件。不符合本款规定的，相关文件视为未提交。　　以纸件形式提出专利申请并被受理后，除涉及国家安全或者重大利益需要保密的专利申请外，申请人可以请求将纸件申请转为专利电子申请。　　特殊情形下需要将专利电子申请转为纸件申请的，申请人应当提出请求，经国家知识产权局审批并办理相关手续后可以转为纸件申请。　　**第八条** 申请人办理专利电子申请的各种手续的，对专利法及其实施细则或者专利审查指南中规定的应当以原件形式提交的相关文件，申请人可以提交原件的电子扫描文件。国家知识产权局认为必要时，可以要求申请人在指定期限内提交原件。　　申请人在提出专利电子申请时请求减缴或者缓缴专利法实施细则规定的各种费用需要提交有关证明文件的，应当在提出专利申请时提交证明文件原件的电子扫描文件。未提交电子扫描文件的，视为未提交有关证明文件。　　**第九条** 采用电子文件形式向国家知识产权局提交的各种文件，以国家知识产权局专利电子申请系统收到电子文件之日为递交日。　　对于专利电子申请，国家知识产权局以电子文件形式向申请人发出的各种通知书、决定或者其他文件，自文件发出之日起满15日，推定为申请人收到文件之日。　　**第十条** 专利法及其实施细则和专利审查指南中关于专利申请和相关文件的所有规定，除专门针对以纸件形式提交的专利申请和相关文件的规定之外，均适用于专利电子申请。　　**第十一条** 本规定由国家知识产权局负责解释。　　**第十二条** 本规定自2010年10月1日起施行。2004年2月12日国家知识产权局令第三十五号发布的《关于电子专利申请的规定》同时废止。 |